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4. 6. 24.(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9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(예비비)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○ 관련서류 : 2024회계연도 결산서(안)

4. 예비비 지출 현황

○ 일반예비비

(단위: 원)

부서명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지출사유
계		242,715,000	239,132,170	3,582,830	
복지정책과	사회복무 요원보상금	242,715,000	239,132,170	3,582,830	사회복무요원 재지정 및 신규 배치인원 확대로 봉급, 교통비 등 인건비 부족분 확보 필요

5. 검토의견

○ 2024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

복지정책과 1건 2억 3,913만원이며 지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
신규 재배치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사용함.

○ 따라서 복지가족국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-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□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- [전문개정 2011. 8. 4.]